

##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은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본 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갱신 후의 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작성한다.
- ④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내방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받는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단, ‘갑’이 ‘갑’(또는 ‘병’)의 차량이용 또는 도보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      |                                                                                                                                                                                                 |
|------|-------------------------------------------------------------------------------------------------------------------------------------------------------------------------------------------------|
| 이용요일 | <input type="checkbox"/> 월 <input type="checkbox"/> 화 <input type="checkbox"/> 수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금<br><input type="checkbox"/> 토 <input type="checkbox"/> 일 |
|------|-------------------------------------------------------------------------------------------------------------------------------------------------------------------------------------------------|

|      |    |           |
|------|----|-----------|
| 이용시간 | 주중 | 시 분 ~ 시 분 |
|      | 주말 | 시 분 ~ 시 분 |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 요일      | 시간                                     | 비고 |
|---------|----------------------------------------|----|
| 주중(월~금) | 주간) 08:00~18:00<br>주·야간) 08:00 ~ 22:00 |    |
| 주말(토)   | 09:00 ~ 18:00                          |    |

④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의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장기요양급여 내용

| 사업명               | 사업 내용                                                                                                                                                                                                       |
|-------------------|-------------------------------------------------------------------------------------------------------------------------------------------------------------------------------------------------------------|
| 상담사업              | - 입소 희망자, 이용자 및 보호자의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실시.<br>-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 문제행동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개별 서비스 실시.                                                                                                                     |
| 신체기능 회복사업         | - 사지압박치르기, 전신마사지, 발마사지 등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체기능 재활 및 회복 도모.<br>- 생활체조, 밴드체조,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근력 및 유연성 강화.<br>- 신체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마사지 프로그램 실시                                                         |
| 인지기능 향상 및 정서안정 사업 | - 미술교실, 수학교실, 색칠공부, 문해교실, 실버인지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이용자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향상 도모.<br>- 가요감상, 인지레크리에이션, 민요교실, 웃음치료, 음악치료, 노래교실 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우울감 해소.<br>- 생월잔치, 요리교실, 시청각교실, 개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 제공. |
| 사회적응 사업           | - 야외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에게 연 1회 인근 지역으로 나들이 실시.<br>-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소그룹산책 실시.<br>- 어르신들의 대인관계성 증진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 송년 행사, 명절 행사, 장터행사 등 실시.                                                              |
| 보호사업              | - 중식, 간식, 석식의 균형 잡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br>(급간식서비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르신의 안전한 등원을 위하여 차량 운행 서비스 실시.(이동서비스)</li> <li>- 혈압, 혈당, 체온, 몸무게 등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건강 관리 실시.(간호서비스)</li> <li>- 양치 및 세면, 신변 활동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위생 및 청결 관리 실시.(위생서비스)</li> <li>- 이용자의 신체 청결 유지.</li> <li>- 독감 예방접종 및 결핵검진 등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 관리 실시.(질병관리서비스)</li> </ul> |
| 가족기능<br>강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간담회를 통해 보호자 간의 정보 공유 및 공감대 형성.</li> <li>- 이용자-보호자의 간의 갈등 해소를 통해 가족 관계성 회복 도모.</li> </ul>                                                                                                                                                                    |
| 기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그룹활동(CA활동)을 통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존감 향상 및 개인별 욕구 충족</li> </ul>                                                                                                                                                                                              |

### 제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 보고 후 센터장이 정한다.
- ② 등급외자의 이용요금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③ 이용요금은 매월 10일 전·후에 청구하여 25일 이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온라인입금 및 내방수납)
- ④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에 의한다.
- ⑤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식재료비 및 간식비) 외 별도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
- ⑥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약제비 발생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6조(계약자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6.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총3개월)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갑’ 또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8.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 제8조(계약의 해제)

- ① ‘갑’(또는‘병’)은 제7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 또는 유선으로 같음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내 ‘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 ④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이사·보호자 변경 등 보호자의 사정, 전염성 질병 및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본인부담금 등 비용부담금이 3달 이상 체납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⑥ 이용대상자의 계약 해제는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정을 한 후,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 제9조(미이용 비용산정)

-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 < 이용자 계약후 미이용에 대한 급여비용 일부 지급 >

- 대상 :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 체결한 이용자가 급여계약 체결 후 이용자측 사정에 의하여 미이용한 경우
- 지급수준 :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이용자는 해당일 예정 본인부담금의 50% 납부 필요)
- 인정범위 : 1일당 최대 ‘8시간~10시간’까지 인정  
월 최대 5일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에 대하여 적용  
※ 3시간 미만 이용 시 이용수가(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 금액청구

### 제10조(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사항)

- ①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알 권리를 갖는다.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③ 신원인수인은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④ 신원인수인은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⑦ 보호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가족간담회 및 기타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⑧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이용자의 보호자는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종사자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11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1.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2. '갑'(또는'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 ③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 ④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 제12조(개인물품)

- ① '갑'은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이용 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개인위생물품, 칫솔, 속옷, 여벌의 옷, 처방전 및 복용약 등)
- ② '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을'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관리)

-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법,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제14조(건강관리)

- ① ‘을’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사무직 2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조(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위급 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8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9조(배상책임)**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18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 **제20조(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